

■ 건강

# “고추 매운 성분 캡사이신 폐암 전이 억제”

“고추 매운 성분  
캡사이신, 폐암 전이 억제”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capsaicin)이 폐암 전이를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9일 ‘데일리메디’ (dailymedi.com)에 따르면 미국 마셜대학교 의과대학의 제이미 프리드먼 분자생물학 교수 연구팀은 7일 캡사이신이 폐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 전이를 억제한다고 증명한 연구를 발표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배양한 비소세포폐암 세포주 실험과 쥐 실험을 통해 캡사이신의 효능을 증명했다. 세포주 실험에서 캡사이신은 암세포 전이를 차단했으며, 쥐 실험에서는 캡사이신을 섭취한 폐암에 걸린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폐 속 암 전이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캡사이신이 세포와 세포 간 접촉 부분에서 활성화되는 Src 단백질을 억제하면서 폐암세포 전이를 막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Src 단백질은 세포의 증식, 분화, 이동, 유착 과정을 조절하는 신호의 전달에 관여한다.

“인도, 태국 등 전통적으로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는 폐암 발생률이 낮다는 기존의 관찰연구들을 접한 것이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 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를 이끈 프리드먼 교수는 “엔젠가 캡사이신이 다른 화학요법제와 함께 다양한 폐암치료에 사용될 수 있길 바란다.” 고 기대했다. 하지만 동시에 “캡사이신을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장장애, 위경련, 설사, 구토 등의 부작용을 해결한 후 가능하다.” 고 덧붙였다.

현재 연구팀은 캡사이신과 같은 양성종양 억제 기능을 지니면서 부작용이 없는 유사물질 개발과 대안물질 탐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폐암은 조기 진단율이 낮고 진단됐을 때 이미 암세포가 뇌, 뼈, 간 등으로 전이된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렵다.



■ 법률 칼럼

# Blanket-L: 이민국의 까다로운 주재원 비자 심사를 피해 대사관으로

두 달 전쯤, 필자가 잠시 근무 하였던 김앤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주재원비자가 한꺼번에 신청자 여러 명이 모두 거절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메모를 써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자산 규모만 10조가 가까이 되는,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큰 회사입니다.

주재원 (L-1)비자는 최근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워졌고, 연장도 쉽지 않은 추세라서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아무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뜻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라고까지 불립니다. 비슷한 조건이라면 L-1보다는 E-2로 돌려서 많이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케이스 분석을 해 보니 이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주주가 50%를 넘는 지배구조로 인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treaty에 기반한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듯이 L-1비자나 E-2비자는 회사의 사업성과 비자 신청인의 자격요건이 잘 설명된 비즈니스 플랜이 정말 중요하데, 이러한 비즈니스 플랜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간단한 변호사 레터로 대신해서 제출했습니다.

RFE를 검토해 보니 이민국은 주재원들의 간부직 직책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요청했습니다만, 이조차 만족스럽게 대응이 되지 않아 결국 비슷한 시기의 제출한 주재원들이 모두 한꺼번에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대응 방안들이 담긴 메모를 받은 그 회사는 필자에게 주재원 비자 재도전을 의뢰했고, 당시 그 회사에서 미국에서 보내야 하는 비자 지원자 수도 더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필자는 클라이언트의 해외 자회사 상황과 미국 내 자회사들의 매출 규모, 사

업 운영 상황들을 근거로 Blanket-L청원서를 먼저 제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Blanket승인을 받기만 한다면, 그 회사는 미국 지사에 직원을 파견해야 할 때 그 직원에 대한 개별 L-1 청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서울에 소재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만 받고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Blanket-L 청원서를 제출하는 일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 Blanket-L 청원서가 회사 차원에서 대표로(?) 미국 이민국의 심사를 한번만 받으면, 그 회사에 속한 직원들은 몇 명이라도 한국 대사관 인터뷰만 거쳐서 미국 지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회사처럼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회사라면 미국 이민국 직원들의 심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한국의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해 친숙한 미국 대사들을 거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이언트는 필자에게 전적인 신뢰를 주시며 진행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Blanket-L청원서를 Premium processing을 통해 열흘 만에 승인 받고, 이전에 미국에서 L-1비자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하셨던 모든 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원이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개별 주재원 비자를 취득하셨습니다.

클라이언트 개별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민법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90623



www.isemusa.com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